제14회 차관회의 회의록

I.일 시: 2024. 4. 5.(금), 10:00 ~ 10:24

Ⅱ.장 소: 정부서울 ⇔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영상)

Ⅲ. 상정안건 : 총 23건

□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4건, 보고안 1건, 부처보고 1건

Ⅳ. 참석자 현황

□ 구성원

주재 : 국무조정실장(서울)								
국 무 조 정 실 장	방기선	0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〇				
교 육 부 차 관	오석환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0		통 일 부 차 관 문승현 〇				
법 무 부 차 관	심우정	0		국 방 부 차 관 김선호 △				
행 정 안 전 부 차 관	고기동	0	세종	국 가 보 훈 부 차 관 이희완 ○ 세종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0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한 훈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강경성	0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 세종				
환 경 부 차 관	임상준	0		고 용 노 동 부 차 관 이성희 △ 세종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Δ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triangle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오기웅 〇				
ril al 경L상(^)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영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최현석)							
대리참석(△) 여성 목부 청소한 목정책실장(황윤정)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i>박살장</i> (황윤정)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김성범)				
비 고								

□ 배석자

방송통신	[위원호	부위	원장	이상인	0		국무조정	실 국두	₽1차장	박구연	0	
공정거리	위원호	부위	원장	조홍선	Δ	세종	금융위원	원회부 의	위원장	김소영	0	
국민권의	위원호	부위	원장	정승윤	Δ	세종	개인정보보	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	0	
행 정 재난안	안 전관:	전 기본	부 부장	이한경	Δ		서 울 행 정 저	특 ¹] 1 부	별 시 시 장	-	×	
감사원				현완교	0		인 사 혁	신 처	차 장	이인호	0	세종
법제	처	차	장	김창범	0	세종	식품의약	품안전	처차장	김유미	0	세종
대	리참석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송상민)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부위원장(박종민) 행정안전부 재난인전관리본부 시회재난실장(진명기)									
刊		고		신임 인사 : 현완교 감사원 제1사무차장(4. 1. 임명)								
간		사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김상춘(서울)								

(10시 개회)

□ 국민의례(사회 : 의정담당관)

국기에 대한 경례

□개일

국무조정실장께서 제14회 차관회의 개의를 선포함.

□ 모두 말씀

금주 대통령님 주재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음. 그간 24회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총 240개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국조실은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여 조치 상황을 실시간 관리·조정할 예정임. 각 부처는 대통령님 지시대로 '신속한 해결'과 '부처 간 긴밀한 협업' 기조하에 소관 과제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법률 제·개정 사항은 22대 국회 구성 즉시 제출하여 신속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 내 완료할 것을 당부드림.

예산 사업은 집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내년도 예산 반영 필요 사업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25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람.

대통령님과 국무총리께서 국정 현안이나 정책 성과 등에 대한 장·차관들의 홍보활동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당부가 있으셨음. 우선, 의료 개혁, 물가 관리 등현안 과제들은 소관 부처를 떠나 전 부처 장·차관님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홍보 활동에 적극 공조해 주시기 바람. 그간의 노력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부처별정책 성과는 소관 부처 중심으로 전방위적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차관님들이 직접 홍보 효과가 큰, 아침 라디오 및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집요할 정도로 설명하고, 언론사 간부, 출입 기자, 유튜버 등 대상 공식· 비공식 간담회, 자료 제공 등으로 우호적 기사 생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각 부처의 협조 덕분에 「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잘 준비되었고, 4월부터 본격 추진됨. 이번 정부 들어 청년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괜찮은 일자리나 자산 형성에 대한 청년들의 갈증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이에, 올해는 연간 1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민간·공공·국제기구 등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청년 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확대함. 각 부처는 소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적이고 체감도 높은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림.

올해 중앙부처 청년인턴이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내실 있는 인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잘 챙겨 주시고, 인사처 등에서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기 바람.

최근 해외 이커머스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음. 개인정보위가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에 대비하여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해외 플랫폼이 국내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소비자 피해 관련 국내법 준수 여부를 조사·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임.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가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개정을 서둘러 주시고, 법률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최근 일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식약처·관세청 등이 협조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 사례가 있음. 안전 문제는 전기용품, 생활화학제품 등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중심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고,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치러짐.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인력지원을 확대하고, 사전투표지를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동반함.

최근 투표소 내 불법카메라가 적발되어, 행안부·경찰청·지자체가 선관위와 협력하여 투표소 집중 점검도 실시하였음.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정부도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함.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투표소 점검 및 투·개표 지원, 사전투표지 이송, 불법행위 단속 등 선거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림.

□ 신임 인사

O 감사원 제1사무차장 현완교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잘 귀담아듣고 협조해 나가겠음.

□ **의안심의**(사회 : 국무조정실장)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41호, 교육부]

o 제안설명: 교육부차관 오석환

ㅇ 주요내용

- 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 절차(안 제3조의2 신설)
 - 1)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연도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변경등록 및 폐쇄신고의 방법(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신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폐쇄자막, 점자자료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하도록 함.
 -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명칭, 유형·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 내역 등의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등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평생교육사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안 제22조의2 신설)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을 실태조사의 내용에 포함하고,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 운영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평가 또는 인증의 시행 등(안 제23조의2 신설)
1)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을 교육 시설·장비·인력의
확충 및 관리의 적합성,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등으로 정하고, 교육과정의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 중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으로 함.

- 2)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 해당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수 있도록 함.
- 마.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인가 등의 절차(안 제29조, 제32조, 제47조 및 제52조)

고등학교졸업 이하 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폐쇄인가받으려는 경우 또는 사내대학형태·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신고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등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학생 보호방안에 관한 서류도 갖추도록 함.

바. 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안 제63조의2, 별표 8의2,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 신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 및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이 매년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학교규칙 및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등으로 규정하는 등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도록 함.

토 의: 이견 없음이의 결: 원안 의결

2.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24호, 법무부]

o 제안설명: 법무부차관 심우정

ㅇ 주요내용

종전에는 경비교도였던 사람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사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경비교도였던 사람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나 사변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하여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토 의: 이견 없음이의 결: 원안 의결

3.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25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ㅇ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에서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회계제도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서에 대한 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토 의: 이견 없음의 결: 원안 의결

4.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26호, 농림축산식품부]
5.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27호, 농림축산식품부]

o 제안설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한훈

ㅇ 주요내용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동물의료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9753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정책목표·추진방향 및 동물의료기술향상과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운용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에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 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하는 봉사활동 목적의 진료행위를 추가하고,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 중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진료 대상 가축에 꿀벌, 수생동물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약으로 인한 위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 품목의 등록취소 등을 하는 경우 농약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46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농약 품목의 등록취소 등을 위해 거쳐야 하는 심의절차를 농약 안전성에 대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로 규정하는 한편,

농약 취급에 따른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 등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공급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하되, 독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등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판매업자는 해당 농약등을 공급대상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토 의 : 이견 없음

○ 일 결: 제826호·제827호 각각 원안 의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28호, 산업통상자원부]

○ **제안설명**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강경성

ㅇ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안내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 토 의 : 이견 없음

○ 의 결 : 원안 의결

7.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29호. 환경부]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30호, 환경부]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31호, 환경부]

o 제안설명 : 환경부차관 임상준

ㅇ 주요내용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사업에 관하여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 철거에 관한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9759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다목적댐의 건설 및 운영관리 사업, 수도시설의 건설 사업,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사업 등과 관련된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효과적인 부과·징수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고, 환경책임보험 보험자 및 환경부장관의 손해 조사 및 손해액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2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범위를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으로 구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손해 조사및 손해액 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의 규모를 사업자의 자기부담금기준 이상으로 정하며, 환경부장관이 보험자를 대신하여 직접 손해 조사 등을할 수 있는 사유를 환경부장관이 손해 조사 등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사유 없이 손해 조사 등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토 의 : 이견 없음

○ 일 결: 제829호∼제831호 각각 원안 의결

1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의안 제832호, 고용노동부]

1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33호, 고용노동부]

○ 제안설명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최현석

ㅇ 주요내용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 절차(안 제2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함.

나.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실시 방법(안 제3조)

-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 2)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고, 고용영향 사전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안 제4조)

-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고용안정 지원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을 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 등에 대해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용안정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5조)

-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고용안정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2) 고용안정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업무 추진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 관리하는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의 범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 관련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 토 의 : 이견 없음

○ 일 결: 제832호·제833호 각각 원안 의결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34호. 여성가족부]

○ **제안설명**: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황윤정

ㅇ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761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조치에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추가하고,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토 의: 이견 없음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35호, 국토교통부]
1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36호, 국토교통부]
15.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안	[의안 제837호, 국토교통부]

○ **제안설명** :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ㅇ 주요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산정할 때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69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제공 여부, 요금 수준 및 배송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안

가.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안 제2조)

공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 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 · 수익 허가(안 제4조)

- 1)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
- 2) 중앙관서의 장 등은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산·부채의 승계시기 및 인계의 승인(안 제6조)

- 1) 국가가 신공항시설 및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이 취득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시기를 해당 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公用開始)가 되는 날로 정함.
- 2) 공단이 자산과 부채의 인계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계하려는 자산의 명세 및 인계하려는 자산·부채의 가액(價額) 등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안 제7조)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마.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공단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공항건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에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등을 적은 채권 원부를 비치하도록 하며,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ㅇ토 의:

-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동 의안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나, 생활형 숙박 시설이 올해 말까지만 거주 용도로 사용을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국토부에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음.
-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국 약 18만 호로 그중 52%인 약 11만 호가 숙박업으로 신고되었고, 나머지 48%는 미등록 상태임. 또한, 약 8천 호가 주거형 오피스텔로 전환된 상태임. 부내 정책과제 점검 회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지자체와도 계속 협의 중임. 생활형 숙박시설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지자체 등에 신고 기준 완화에 대해 독려해주시면 감사하겠음.

-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숙박 관련 규제나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문체부에서는 공유숙박의 차원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올 연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관계부처 간 협의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드림.

1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38호. 해양수산부]

1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39호, 해양수산부]

o 제안설명: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김성범

ㅇ 주요내용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염물질저장시설의 확충을 통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79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치·운영 신고서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해역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역관리청은 해당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형식 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해당 형식 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71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 토 의 : 이견 없음

○ 일 결: 제838호·제839호 각각 원안 의결

18.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제출(안)[의안 제842호, 기획재정부]19.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제출(안)[의안 제843호, 기획재정부]20.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
[의안 제844호, 기획재정부]

○ **제안설명 :**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ㅇ 주요내용

▶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제출(안)

- 일반·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496조 9,596억 원과 490조 4,145억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결산상잉여금 6조 5,451억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3조 8,617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6,835억 원이며, 68개기금 전체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889조 7,582억 원임
 -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6% 수준인 36조 7,680억 원 적자('22년도 대비 27조 8,027억 원 개선),
 -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9% 수준인 87조 308억 원 적자('22년도 대비 30조 14억 원 개선)임
-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한 재무결산 결과, 자산은 3,014조 4,826억 원, 부채는 2,439조 2,680억 원이며, 순자산은 575조 2,146억 원임
 -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092조 5,147억 원으로 '22년도보다 59조 779억원 증가하였음
 - 국가채권 현재액은 514조 1,313억 원으로 '22년도보다 44조 3,231억 원 증가하였음
 - 국유재산 현재액은 1,369조 8,611억 원으로 '22년도보다 6,539억 원 증가

하였음

- 물품 현재액은 16조 549억 원으로 '22년도보다 8,424억 원 증가하였음
- o 58개 중앙관서의 성과보고서 분석결과, 1,068개 성과지표 중 821개 성과 지표의 성과목표를 달성(달성률 76.9%)하였음

▶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제출(안)

예비비 예산액은 4조 6,003억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일반경비와 재해대책 등에 1조 3,091억 원이 지출되었음.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 전액을 교육교부금 정산에 사용토록 함.

○ 토 의 : 이견 없음

○ 일 결: 제842호∼제844호 각각 원안 의결

21. 영예수여안

[의안 제845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ㅇ 주요내용

과학기술 진흥 유공 44명, 법의 날 기념 유공 8명, 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 13명, 장애인의 날 유공 7명, 창원국가산업단지 50주년 유공 3명,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2명, 우호증진 외국인 포상 1명 등 총 7개 부문 유공자 78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려는 것임.

○ 토 의 : 이견 없음

○ 일 결 : 원안 의결

22. 2023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의안 제840호, 기획재정부]

○ **제안설명 :**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ㅇ 주요내용

- □ 성과목표관리 결과
 - (종합성과) 58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1,068개 중 821개 지표의 성과목표 달성(달성률 76.9%) → 전년(77.5%) 대비 △0.6%p 감소
 - 성과지표별 달성도 평균은 97.7%로 전년(96.2%) 대비 +1.5%p 상승
 - (중앙관서별) 58개 중앙관서 중 13개(22.4%)는 소관 지표 모두 성과목표 달성(성과목표 달성률 100%)
 - 성과목표 달성률이 80% 이상인 기관은 26개(44.8%)이며, 성과목표 달성률이 50% 이하인 기관은 6개(10.3%)
 - 전년 대비 성과목표 달성률이 개선된 기관은 26개(44.8%)인 반면, 달성률이 악화된 기관은 22개(37.9%)
 - ㅇ (기관유형별) 성과지표수가 많은 장관급 기관이 성과지표 달성률이 높은 모습
 - 달성률은 장관급 기관 77.6%(성과지표수 768개), 차관급 기관 76.9%(264개), 기타 기관 61.1%(36개)

○ 토 의 : 이견 없음

o **의 결 :** 원안 접수

□ 부처보고

1.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제64주년 4·19혁명,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 계획

○ 구두보고 :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천명하며 4월 11일 수립되어,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법통이 이어지고 있음. 올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광복의 여정을 이어 나간 선열들의 강인한 의지와 독립 정신을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

4·19혁명은 1960년 자유·민주·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혁명이며, 64년 전 시민들의 용기와 외침이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음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자 함. 4월 26일, 올해 첫 기념식을 거행하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국방 의무를 수행 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임.

독립, 호국, 민주의 정신이 모두 담겨있는 4월 정부기념행사가 의미 있게 거행될 수 있도록 차관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

○ 토 의: 의견 없음

□ 산회

국무조정실장께서 제14회 차관회의 산회를 선포함.

(10시 24분 산회)

- ▶ 차관회의 회의록은「차관회의 규정」제12조 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발언요지 등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내용: 회의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포함
- ▶ 차관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is.go.kr)'에 공개되고 있습니다.